

GS 03-00-00 감사위원회 운영 규정

제정 2010-07-30

개정 2012-03-30

개정 2016-03-28

개정 2019-03-11

제1장 총칙

제1조 (목적)

이 규정은 감사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고 한다)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적용 범위)

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,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3조 (위원회의 직무 및 권한)

- ① 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.
- ② 위원회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.
- ③ 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을 선정한다.
- ④ 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 외에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.

제2장 구성

제4조 (구성)

- ① 감사위원(이하 "위원"이라 한다)은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.
- ②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.
- ③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, 사외이사 아닌 위원은 상법 제542조의11 제3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- ④ 사외이사인 위원이 사임·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3항의 위원수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위원회의 구성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5조 (해임)

위원은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해임할 수 있다.

제6조 (위원장)

- ① 위원회는 제10조 규정에 따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위원장을 선정하여야 한다.
-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소집하며 업무를 총괄한다.
- ③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3장 회의**제7조 (회의 소집)**

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.

제8조 (소집권자)

-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 그러나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6조 제3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9조 (소집 절차)

- ①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일전에 각 위원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.
- ②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.

제10조 (결의 방법)

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.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제11조 (부의사항)

- ①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 1.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
 - 가.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
 - 나.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
 2. 이사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
 - 가. 이사회에 대한 보고사항
 - 나. 감사보고서의 작성·제출

- 다.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 청구
- 라. 이사에 대한 영업보고 청구
- 마. 이사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
- 3. 감사에 관한 사항
 - 가. 업무·재산 조사
 - 나. 자회사의 조사
 - 다. 이사의 보고 수령
 - 라. 이사와 회사간의 소대표
 - 마. 소수주주의 이사에 대한 제소 요청 시 소제기 결정 여부
 - 바. 외부감사인의 선정 및 해임
 - 사.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의 보고 수령
 - 아.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의 보고 수령
 - 자. 내부통제제도(내부회계관리제도 포함)의 평가
 - 차. 내부회계 관리 규정의 제·개정
 - 카. 법령과 정관, 이사회에서 감사위원회 결의를 요하는 사항 및 기타 감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12조 (관계인의 출석 등)

-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임직원 및 외부감사인을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-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13조 (의사록)

-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
제14조 (외부감사인과의 연계)

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 및 절차와 결과를 활용하여 감사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4조의2 (외부감사인의 선정 등)

- ① 위원회는 외부감사인 선정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수립하고, 이에 따라 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.

- ② 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보수, 감사시간 및 감사에 필요한 인력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정하고, 선정된 감사인에 대해 해당 사항이 준수되었는지 사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.
- ③ 회사가 증권선물위원회에 감사인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, 사전에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④ 회사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는 경우, 증권선물위원회에 감사인의 재지정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15조 (전담부서의 설치 등)

-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위원회를 보조하는 전담부서를 설치·운영하거나 회사의 내부감사부서를 활용할 수 있다.
- ② 위원회는 전담부서의 설치·운영, 전문인력의 임용 및 운영비용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.

제16조 (감사록의 작성)

- ① 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- ②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.

제17조 (규정의 개폐 등)

- ① 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.
- ② 이 규정이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관, 이사회 규정 및 관련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다.